##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48 발의연월일: 2021. 8. 6.

발 의 자:인재근·김승남·소병훈

남인순 · 이원택 · 최연숙

조오섭 · 허종식 · 서영석

최종윤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. 실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5월까지 총 92만 4,271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음. 이는 월평균 3만 6,000건에 달하는 수치로, 올해 3분기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100만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.

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노인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바,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.

현행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, 의료기관,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,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.

이에 노인복지관도 시설・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

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,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비롯한 웰다잉 제도의 정착 및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). 법률 제 호

##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	제11조(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
기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	기관) ①
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・인력	
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	
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	
서 등록기관(이하 "등록기관"이	
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
	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